

[붙임 1]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동별)

※ 검사시간: 10:00 ~ 16:00

연번	동 별	검 사 일	검 사 장 소	추가검사일정
1	삼양동	2016. 5. 30.(월)	동 주민센터 앞	○ 일시: 2016. 6. 22.(수) ○ 장소: 미아동 주민센터 앞
2	미아동	2016. 5. 31.(화)	”	
3	송중동	2016. 6. 1.(수)	”	
4	송천동	2016. 6. 2.(목)	10시~12시 동 주민센터 앞 14시~16시 송인시장	
5	삼각산동	2016. 6. 3.(금)	솔샘시장	
6	번1동	2016. 6. 7.(화)	10시~12시 동 주민센터 앞 14시~16시 북부시장	○ 일시: 2016. 6. 23.(목) ○ 장소: 번2동 주민센터 앞
7	번2동	2016. 6. 8.(수)	동 주민센터 앞	
8	번3동	2016. 6. 9.(목)	”	
9	수유1동	2016. 6. 10.(금)	수유시장	○ 일시: 2016. 6. 24.(금) ○ 장소: 수유2동 주민센터 앞
10	수유1동	2016. 6. 13.(월)	수유재래시장	
11	수유1동	2016. 6. 14.(화)	동주민센터 앞	
12	수유2동	2016. 6. 15.(수)	”	
13	수유3동	2016. 6. 16.(목)	강북종합전통시장	
14	수유3동	2016. 6. 17.(금)	동 주민센터 앞	
15	우이동	2016. 6. 20.(월)	”	
16	인수동	2016. 6. 21.(화)	”	

[붙임 2]

서울특별시강북구 공고 제2016- 호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검사 기간에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 4. .

강 북 구 청 장

1.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등
2. 정기검사 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저울, 접시저울 및 판저울, 전기저울, 전기저울)
3. 각 동별 검사일정 및 검사장소 ※ 시간: 10:00~16:00, 우천 시에도 검사 진행

연번	동 별	검 사 일	검 사 장 소	추가검사일정
1	삼양동	2016. 5. 30.(월)	동 주민센터 앞	○ 일시: 2016. 6. 22.(수) ○ 장소: 미아동 주민센터 앞
2	미아동	2016. 5. 31.(화)	〃	
3	송중동	2016. 6. 1.(수)	〃	
4	송천동	2016. 6. 2.(목)	10시~12시 동 주민센터 앞 14시~16시 송인시장	○ 일시: 2016. 6. 23.(목) ○ 장소: 번2동 주민센터 앞
5	삼각산동	2016. 6. 3.(금)	솔샘시장	
6	번1동	2016. 6. 7.(화)	10시~12시 동 주민센터 앞 14시~16시 북부시장	○ 일시: 2016. 6. 24.(금) ○ 장소: 수유2동 주민센터 앞
7	번2동	2016. 6. 8.(수)	동 주민센터 앞	
8	번3동	2016. 6. 9.(목)	〃	
9	수유1동	2016. 6. 10.(금)	수유시장	○ 일시: 2016. 6. 24.(금) ○ 장소: 수유2동 주민센터 앞
10	수유1동	2016. 6. 13.(월)	수유재래시장	
11	수유1동	2016. 6. 14.(화)	동 주민센터 앞	
12	수유2동	2016. 6. 15.(수)	〃	
13	수유3동	2016. 6. 16.(목)	강북종합전통시장	
14	수유3동	2016. 6. 17.(금)	동 주민센터 앞	
15	우이동	2016. 6. 20.(월)	〃	
16	인수동	2016. 6. 21.(화)	〃	

- 가. 다만 최대용량 10톤이상 대형저울(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포함)은 재 검정 대상
4. 다음의 계량기 소유자로서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은 미리 계량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소재장소정기검사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 계량기가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나. 계량기를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수의 계량기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5.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지역경제과(☎901-64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붙임 3]

[별지 제21호 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p>「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					

[붙임 4]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 안녕하세요. ○○○ 님!!!
우리 구정에 항상 적극 참여,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2016년 올해는 2년 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는 해입니다.
정기검사는 2016년 5월 30일부터 ()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정기검사에 앞서 검사대상 계량기를 조사하오니 귀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계량기 조사
요원에게 소유하고 계신 계량기를 빠짐없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 안내: 02-901-6453(지역경제과 담당 이학순)
- 정기검사 일정 ☞ 시간: 10:00~16:00, 우천 시에도 검사 진행

동 명	검사일자	검사장소
삼양동	2016. 5. 30.(월)	동 주민센터 앞
미아동	2016. 5. 31.(화)	동 주민센터 앞
송중동	2016. 6. 1.(수)	동 주민센터 앞
송천동	2016. 6. 2.(목)	동 주민센터 앞(오전) 송인시장(오후)
삼각산동	2016. 6. 3.(금)	솔샘시장
번1동	2016. 6. 7.(화)	동 주민센터 앞(오전) 북부시장(오후)
번2동	2016. 6. 8.(수)	동 주민센터 앞
번3동	2016. 6. 9.(목)	동 주민센터 앞

동 명	검사일자	검사장소
수유1동	2016. 6. 10.(금)	수유시장
	2016. 6. 13.(월)	수유재래시장
	2016. 6. 14.(화)	동 주민센터 앞
수유2동	2016. 6. 15.(수)	동 주민센터 앞
수유3동	2016. 6. 16.(목)	강북종합전통시장
	2016. 6. 17.(금)	동 주민센터 앞
우이동	2016. 6. 20.(월)	동 주민센터 앞
인수동	2016. 6. 21.(화)	동 주민센터 앞

※ 예정 일정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16. 5.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붙임 6]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정기검사 수검 의무자	영업장소재지	구 ○○로 ○○ (층) -			
	상 호			성 명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수검통지서번호	계량기명	형식 또는 능력	기물번호	사용목적(거래, 증명)

귀하 소유의 위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로서 2016년도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리오니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검사일시: 2016년 월 일 (수검시간: 오전 시 ~ 오후 시)
2. 검사장소:
3. 조사자: (인)

2016년 월 일

강 북 구 청 장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수령 확인

위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로서 정기 검사에 따른 안내 및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수령자: (인)

[붙임 7]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사용중지 표시증			
종 류		기 물 번 호	
사 유			
<p>위의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증인의 표시를 제거한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정계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2016년 월 일</p> <p>강 북 구 청 장 (인)</p> <p>검사자 : 계량담당 공무원 (인)</p>			
<p>※ 유의사항</p> <p>위의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p>			

[붙임 8]

[별표3]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제32조 관련)

합격증인표시

1. 정기검사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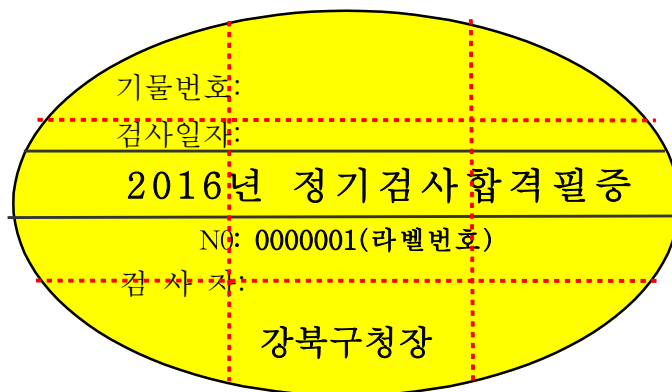


바탕색: 노랑

※ 이전 정기검사필증과 다르게 준비[14년도: LIGHT BLUE(69번)]

2. 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야 한다.

3. 검사증인은 다음과 같이 미세한 구멍을 뚫어 떼어낼 때 파기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검사증인의 제거방법

검사증인을 삭제하는 등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